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지 적 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6
----------	-----

제출년월일 : 2021. 8.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21.6.9.자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안 제2조)

-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등(안 제3조)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과 기준일 구 홈페이지에 고시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징수방법

라.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 위원회 명칭 변경(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위촉직 위원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7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함.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2조)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공제 가입 등

사. 위탁(안 제14조)

- 「도로명주소법」 제33조제2항의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및 지방공사·공단의 위탁범위 확대 및 근거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 1)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등
- 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 등
- 3)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7. 8. ~ 2021. 7. 28.(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2]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부패/성별 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기타의견)

구분	기타의견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개선안 포함)
인권 영향 평가	문화도시 조성과의 연계된 조항 삽입을 추천함. 제작 비용이나 기준일 만을 고려 할 것이 아니라 문화도시 조성과 연계가 필요함.	미반영	도로명 부여 및 변경, 주소정보 시설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연계 등 반영이 가능하므로 조례에 별도 규정이 필요치 않음.
	제7조에 위원의 임기는 두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위원 회 위원이 1회 연임됨.	반영	제7조제1항 “~,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를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반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성북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북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북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붙임1] 관계법령

1.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등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43조 등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제24조 등

제24조(건물번호판의 교부 신청 등) ⑥ 시장등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4. 작성자

기획재정국 지적과장 차미영